



전라북도

수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장 귀하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원장	2013. 8. 12.	지시	청결한 전북
발자	번호 1528	결재·공람	기획조정실장
처리과	기획예산팀		
담당자	이한		기획예산팀장

1. 전라북도 감사관-2802(2013. 4. 9)호와 관련입니다.

관외부장
장부장

2. 2013년 감사계획에 의하여 2013. 5. 7. ~ 5. 14.(6일간)까지 귀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자체감사규칙 제30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 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요구사항을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개선사항 (별송) 1부
2)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전라북도



주무관 김원태 회계감사담당 김익수 감사관 전결 2013. 8. 9.
김수태

협조자

시행 감사관-6315 (2013. 8. 9.) 접수

우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세무회계과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2042 팩스번호 063-280-2049 / kimwt21@korea.kr / 비공개(4,6)

쉽고 편리한 우리 집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부패Zero! 클린전북!」

남원의료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2013. 5. 7 ~ 5. 14)

순번		제 목	의 결 내 용													
			행정상					재 정 상(천원)					신 분 상			
			시 정	주 의	시 정 권고 주의	개 선	권 고	계	회수	감 액	추 징	환 급	중징계	경징계		
일련 번호	페이지	계	10건		2	4	1	2	1	1,406	1,406					3
1		불용물품 매각대금 횡령			○					1,406	1,406					
2		공공의료보건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												
3		공중보건의 기타보수 지급 부적정	○													
4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												
5		위험수당지급 부적정	○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운영 및 직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7		병실 및 병상운영 불합리						○								
8		여비 지급방법 부적정		○												
9		진료성과급 산출기준 불합리					○									
10		진료재료의 재고관리 전산화 미흡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 목] 불용물품 매각대금 횡령

[기 관·부 서 명] 남원의료원 시설관리팀

[행정상 처분] 시정·권고·주의

[재정상 처분] 회수 1,405,700원

[신분상 처분]

1. 남원의료원 시설관리팀 팀장 기능5급 성
(징계시효 도과로 미처분)
2. 남원의료원 총무팀 팀원 기능9급 김
(징계시효 도과로 미처분)

[처 분 이 유]

1. 불용물품 매각 현황

(단위 : 원)

매각일시	매각대금	불용물품	매각업체	비 고
계	1,405,700			
2009. 9. 30	534,700	- 닥터설비, 모빌렉 - 의무기록지(파지) - 기타 고물 등	태 성 스틸자원	매각대금 개인 계좌입금 (강 은행)
2009. 10. 6	392,000			
2009. 11. 13	479,000			

2. 관련규정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제266조의1(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수입

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제266조의1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남원의료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직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 시설관리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09년도에 발생한 3건의 불용물품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절차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팀 기능 5급 성 이 주도하여 동료직원들과 함께 의료원에서 발생한 불용물품인 닥터설비, 의무기록지(파지), 고철 등에 대한 선별작업을 거쳐 고물수집상(태성스틸자원)으로 직접 운반하여 매각하였고, 매각대금 1,405,700원에 대하여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남원의료원 강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팀장 성 이 그중 1,405,000원을 인수하여 시설관리팀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을 관련규정에 반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남원의료원장은

1. 시설관리팀 성. 으로부터 횡령액 1,405,700원을 회수하시고,(시정)

2. 징계시효 도과로 신분상 처분을 할 수 없는 성. 과 김 .에 대하여는
추후 인사조치 시 고려하시기 바라며,(권고)

3. 앞으로 횡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 목] 공공의료보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기관·부서명] 남원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없음

[처 분 이 유]

1. 국·도비 보조금 목적외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적 요	목적외 집행액	비 고
계	170,000		25,345	
2010 공공보건프로그램 (건강증진병원 사업)	70,000	간호사 중식비	1,890	
		빔프로젝트 구입	1,421	
		노트북 구입	1,342	
2011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주민건강안전망구축)	50,000	복사기 구입	4,974	
		모니터 외 1종	3,358	
		사무비품(의자, 책상 등)	2,300	
2012 공공보건사업 (지역주민건강안전망구축)	50,000	나누리봉사단 조끼 및 모자구입	6,060	
		엘리베이터 홍보 모니터	4,000	

2. 관련법령

붙임 참조

3. 위법·부당사항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병원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와 제12조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작성지침」 ‘공공의료보건의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작성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0 ~ 2012년까지 공공의료보건의사업에 국·도비 170,000천원 상당을 지원받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야 함에도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봉사단조끼 및 모자구입비(6,060천원), 복사기 구입비(4,974천원), 간호사 중식비(1,890천원) 등으로 25,345천원을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경비를 변경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남원의료원장은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 목] 공중보건의 기타보수 지급 부적정

[기관·부서명] 남원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없음

[처 분 이 유]

1. 공중보건의 기타보수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한도액의 2배 금액	남원의료원 규정에 근거한 실제 지급액	초과지급액	비 고
계	390,946	890,300	499,354	
2010년	124,684	241,507	116,823	
2011년	116,349	301,997	185,648	
2012년	114,397	285,280	170,883	
2013년 4월	35,516	61,516	26,000	

※ 세부내역 : 붙임 1

2. 관련규정

붙임 2 참조

3. 위법·부당사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보건복지부 2010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공중보건의사에게 기본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별로 진료활동장려금, 보건사업장려금, 공중보건활동

장려금, 연구비, 역학조사 활동비 등(이하 “기타보수”라 함)을 월 한도액(700천원)의 2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중복사유 발생 시는 금액이 가장 큰 수당 한 가지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를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기본보수 이외의 기타보수는 월 한도액(700천원)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내에서 진료성과급, 응급실 특근비, 응급실 연장근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에서는 2004. 3. 2. 남원의료원 진료성과급 지급 규정을 보건복지부 보수지급 기준과 다르게 공중보건의를에게도 일반의사와 동일하게 진료실적 목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상당을 진료 성과급으로 지급토록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다.¹⁾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의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공중보건의를에게 기타보수를 지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기타보수 월 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여 공중보건의 신 에게 2,790천원을 지급하는 등 위 현황과 같이 2010~2012년까지 보건복지부지침에서 규정하는 공중보건의 기타보수 지급기준에 반하여 공중보건의 10명에게 기타보수로 499,354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남원의료원장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맞게 공중보건의 기타보수 지급기준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1) 남원의료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의료원 : 강진의료원, 김천의료원 등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 목]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기관·부서명] 남원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1. 남원의료원 관리부 부장 사무직 4급 오 (경징계)

2. 남원의료원 관리부 총무팀장 사무직 5급 서 (경징계)

[처 분 이 유]

1. 최근 3년간 진료성과급 지급 현황

- 2010년 의업수익 목표 초과금액의 10% : 838백만원
- 2011년 의업수익 목표 초과금액의 10% : 985백만원
- 2012년 의업수익 목표 초과금액의 10% : 1,139백만원
- 2012년 성과 추가분
 - 지급일 / 지급액 : 2012. 12. 31. / 325백만원

2. 관련규정

- 남원의료원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 제2조(목표액 설정) ① 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를 제외한 과별 또는 개인별 진료목표액을 정하여야 한다.
 - 1. 당해 의사 년평균 보수액
 - 2. 최근 3년간 각 진료과별 총 의업수익
 - 3. 당해연도 총 의업수익
- 같은 규정 제3조(성과급) ① 진료성과급은 진료과별 기준급과 목표급

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목표급

가. 직접진료의사는 월간 진료실적액이 월 각 목표액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공중보건 의사 포함)

3. 위법·부당사항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당해 의사 연평균 보수액, 최근 3년간 각 진료과별 총 의업수익, 당해연도 총 의업수익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설정하고 각 목표액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에 따라 진료과별 의업수익 및 의업수익 목표액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의 규정에 따라 의업수익 목표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진료성과급으로 의사들에게 2010년 838백만원, 2011년 985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2. 1. 16. 2012년도 남원의료원 진료성과급 운영계획²⁾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4년간 의사들의 연봉 동결로 다수의 진료과장들이 이직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의사수급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2011년도 진료실적액이 전년대비 589백만원 증가로 경영개선²⁾의 성과 등을 감안한 의사수급 및 사기저하 대책방안으로 진료실적급의 탄력적 지표산정의 필요성과 진료성과급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의사들에게

2) 감가감각前 손익 : '10년 354백만원 흑자, '11년 1,652백만원 흑자

2012년도 의업수입 목표액을 2011년 대비 2% 인상하고, 진료성과금으로 325백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후, 2012년도 진료성과금 지급기준의 규정에 따라 의업수익 목표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012년도분 진료성과금으로 1,13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도 남원의료원 진료성과금 운영계획'에 따라 진료과별 진료수익 기여도 및 근무환경,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2012. 12. 31. 마취통증의학과 김 에게 1,200천원을 지급하는 등 25명의 의사들에게 총 325백만원을 추가지급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남원의료원장은

1. 앞으로 진료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지급하시기 바라며,
2. 관련규정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신분상 처분에 따른 문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 목] 위험수당 지급 부적정

[기관·부서명] 남원의료원 경리팀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없음

[처 분 이 유]

1. 위험수당 지급 현황

(단위 : 명/천원)

년도	총 액		적 정		부적정		비 고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계	1,257	510,470	914	381,271	343	129,199	
2010	311	158,328	226	117,888	85	40,440	
2011	329	153,454	245	115,045	84	38,409	
2012	326	149,208	236	111,727	90	37,481	
2013. 4.까지	291	49,480	207	36,611	84	12,869	

※ 위험수당 부적정 지급 세부내역 (불입)

2. 관련규정

○ 남원의료원 보수규정 제29조(시간외근무수당 등)

[별표7]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

수 당 별	지급기준	지급률 및 지급액
12. 위험수당	• 갑종 50천원 • 을종 40천원	○ 진단, 검사, 수술, 치료,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 3,800V 이상의 고압전류를 취급하는 기술자 ○ 직접치료와 간호를 하지 아니하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3. 위법·부당사항

남원의료원 보수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위험수당은 갑종 50천원, 을종 40천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을종은 직접치료와 간호를 하지 아니하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원에서는 전 직원에게 갑종과 을종의 위험수당을 적용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의 약국업무보조자, 구내식당근무자, 일반행정업무자,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자 등은 구체적으로 결핵, 나병, 전염병 또는 정신병 환자에 대하여 직접치료와 간호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시 접촉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실제로 약국업무보조는 각각 병실과 분리되어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일반업무, 환자 접수 및 구내식당 근로자들도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직접 환자들과 상시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염병 감염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 공기 감염, 오염 음식물에 의한 감염 등 일반인들도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위험수당 지급 시에는 담당 사무별 상시 접촉 여부를 확인한 후 수당 지급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남원의료원에서는 위험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갑종외의 나머지 직원 105명에게 을종에 해당하는 위험수당으로 매월 40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처 분 요 구]

남원의료원장은

위험수당 지급 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 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운영 및 직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기관·부서명] 남원의료원 시설관리팀, 총무팀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1. 남원의료원 관리부 부장 사무직 3급 김 (퇴직으로 미처분)

2. 남원의료원 관리부 시설관리팀장 기능직 5급 성 (경징계)

[처 분 이 유]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운영 및 직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현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미운영 기간

- 구성일자 : 2007. 9. 1.
- 구성인원 : 12명(사용자 6, 근로자 6)
- 기 능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 미운영 기간 : 2010. 1. 1 ~ 2012. 12. 31(3년간)
※ 2007. 9. 1 ~ 2009. 12. 31.까지 7회 운영

○ 직원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현황

- 기 간 : 2012. 1. 1 ~ 2012. 12.31 / 매분기
- 대 상 : 344명(전직원 309, 2012년 신규자 35)
- 내 용 : 분기별 전직원 정기교육 및 신규자 교육

2.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같은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3. 위법·부당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31조에 따르면 의료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분기마다 운영하여야 하고, 의료원의 신규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07. 9. 1. 남원의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매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0. 1. ~ 2012. 12. 기간 동안 전혀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의료원장은 직원으로 채용된 신규자와 전직원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2년도에는 직원 및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2012. 12.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제31조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2013. 1. 21. 과태료 19,000천원을 납부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남원의료원장은

1.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시고, 전직원 및 신규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어 신분상 처분에 해당하는 문책조치를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 목] 병실 및 병상운영 불합리

[기관·부서명] 남원의료원 기획예산팀

[행정상 처분] 권고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없음

[처 분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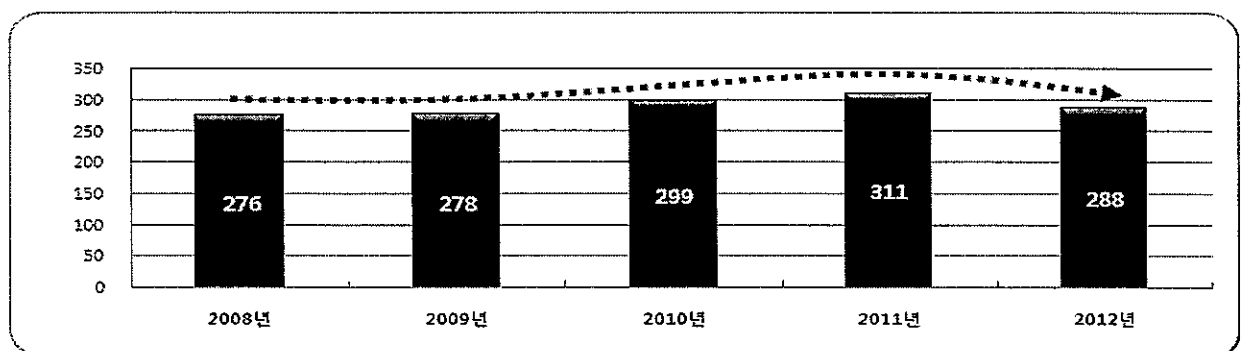
1. 현 황

가. 최근 5개년 진료실적 현황

(단위 : 천명, 천원)

구 분	평균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입원환자수	106	101	101	109	113	105	
가동병상수	291	276	278	299	311	288	
병상이용율(%)	83	79	79	85	89	82	
환자1인당 입원수익	138	126	137	140	142	144	

나. 최근 5개년 가동 병상수 추이



다. 입원환자 1인당 민간병원 대비 남원의료원 입원수익 및 인건비 비율
(단위 : 천원)

구 분	남원의료원	민간병원 평균				비 고
		병상수				
		200이하	300이하	400이하	500이하	
환자당 입원수익	138	140	160	205	224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	68	41	44	42	46	

※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라. 전국 의료원 대비 남원의료원 병상운영 현황(2013. 7월 기준)

(단위 : 수, 명)

구 분	운영병상	정원	현원	운영병상/현원	비 고
전국 33개 의료원	8,070	7,470	8,047	1.00	
남원의료원	350	301	300	1.17	

2. 권고사항

남원의료원에서는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민간 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2013. 5월 현재 5병동 117병실 35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가동 병상수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291병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2012년말 현재 남원시 인구는 87,000명 정도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13,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12. 6월 이후 환자유출 증가 등으로 단기간내에 입원환자의 수요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현황 ‘다’ 및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원 환자 1인당 입원수익은 유사규모 민간병원 대비 67%로 수익이 낮고, 인건비율이 유사규모 민간병원 대비 26%로 높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의 현원 대비 운영병상이 1실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남원의료원은 1.17실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원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병상 및 병실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보아지므로 과잉 공급되고 있는 병상 및 병실을 최적효율 규모³⁾로 운영할 경우 경영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원 대비 병상수의 비율 감소로 간호사 인력충원 없이도 여유인력을 활용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처 분 요 구]

남원의료원장은

남원의료원의 경영개선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적효율 규모로 병상 및 병실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예시 : 현행 350병상 → 299병상으로 감축 운영

[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 목] 여비 지급방법 부적정

[기관·부서명] 남원의료원 경리팀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없음

[처 분 이 유]

1. 출장여비 집행 현황

(단위 : 건, 천원)

년 도	예산액	집행액	총 출장건수	2인이상 출장건수	비 고
계	134,767	98,884	1,469	688	
2010	38,898	38,066	432	218	
2011	33,767	31,368	503	242	
2012	35,581	24,754	461	182	
2013. 4.까지	26,521	4,696	73	46	

2. 관련규정

-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함) 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 ① 임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 여비의 지급방법

- 3) 그 외 여비 항목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

남원의료원 여비규정 제3조,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 2, 공무원여비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시 여비의 지급방법에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위 현황과 같이 2010 ~ 2013. 4현재까지 업무상 출장 직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2인 이상이 함께 출장할 경우 출장자 중 대표 1명의 구두 요청을 받아 1명에게 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등 관련 여비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남원의료원장은

앞으로 출장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 직원의 각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 목] 진료성과급 산출기준 불합리

[기관·부서명] 남원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처분] 개선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없음

[처 분 이 유]

1. 병실료 수익으로 인한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병실료	진료성과급 지급액(10%)	비고
계	11,621,000	1,162,100	
2010	3,807,000	380,700	
2011	4,005,000	400,500	
2012	3,809,000	380,900	

2. 관련규정

○ 남원의료원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 제4조 (재료비) ① 재료비라 함은 진료수입액에 포함된약품비와 급식비, 마취재료비, 수혈비, 처치 및 수술 재료비, 캐스트재료비, 검사재료비, 방사선재료비와 DRG(포괄수가제) 정액진료비에 포함된 재료비로 한다.

- 같은 규정 제5조(진료실적 산정) ④ 월간 진료실적 산정은 <월간 진료과별 의업수입 - (월간 진료과별 의업수입 × 전년반기 진료과별 삭감율) - 재료비>로 한다.

3. 위법·부당사항

남원의료원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진료실적 산정은 월간 진료과별 의업수입에서 재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하여 산정하고, 재료비라 함은 약품비, 급식비, 마취재료비, 수혈비, 처치 및 수술재료비 등 정액진료비에 포함된 재료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0 ~ 2012까지 진료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병실료⁴⁾는 의사의 진료실적에 따른 의업수입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남원의료원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에 병실료 수입을 의업수입에 포함하여 진료성과급을 산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1,162,100천원 상당을 진료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남원의료원장은

2) 환자가 입원치료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입원환자 진료비 총액의 26%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감가상각 비용이며 의사의 행위료로 보기에는 부적합함.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 목] 진료재료의 재고관리 전산화 미흡

[기관·부서명] 남원의료원 공공의료팀

[행정상 처분] 개선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없음

[처분 이유]

1. 현 황

○ 2010~2012년까지 진료재료 수불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기초잔액	당기수입액	당기불출액	기말잔액
계	236,143	5,876,860	5,861,015	251,988
2010년	75,223	1,880,163	1,878,748	76,638
2011년	76,638	1,980,773	1,973,129	84,282
2012년	84,282	2,015,924	2,009,138	91,068

※ 진료재료 연 평균 사용액 : 1,953,672천원

2. 문제점

진료재료의 품목 수가 매우 많고 품목별 단가가 낮은 진료재료의 수불 기록을 모든 관리부서에서 수기식이나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능률적인 업무처리로 판단된다.

수작업에 기록된 재고관리의 불출기록을 살펴보면, 재료의 사용자에게 불출하면 이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수술재료의 불

출수량의 처방전 등의 집계결과와 비교해보는 관리절차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원은 2004년 8월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개발한 종합의료정보시스템(Medios III)의 일환으로 ‘통합재고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09년 중앙공급실 위주로 관련부서가 전산화를 위한 업무를 협의하였으며, 통합재고관리시스템의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였으나, 재고관리업무를 전산화하지 못한 채 수기식 기록을 유지하면서 감사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의료원 전산담당자는 수불기록의 입력업무에 대한 부서별 담당자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품목별로 의료수가 인정여부를 프로그램화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전산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권고사항

의료원은 수기식 기록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비능률을 줄이기 위하여, 종합의료정보시스템(Medios III)의 통합재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재고관리업무를 전산화하도록 하고,

부서간의 의견불일치는 재료의 관리책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재료의 관리책임을 부서별로 구분한 후에 재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산입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 분 요 구]

남원의료원장은

앞으로 부서간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능률성과 재고관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진료재료의 재고관리를 전산화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